

의료기관 세무 실무

병원 경영과 관련 수시로 변경되는 복잡한 세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본지는 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주요 세무에 관한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게재함으로써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I. 의료기관과 세무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을 위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곳으로서 통상 비영리의료기관과 개인병원으로 구분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은 설립주체별로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재단법인병원, 사단법인병원, 의료법인병원, 학교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공사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주로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상 영리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비영리의료기관이라고 한다.

비영리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규정된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데 현행세법상 비영리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어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이 적용되고 개인병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법인형태의 의료기관과 개인병원은 법인과 개인이라는 차이점과 더욱이 비영리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라는 특징 때문에 납세의무의 전반적 수행과정이 다르지만 의료업이라는 특징에 따른 세액산출과정은 대체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다.



글·유진호
신원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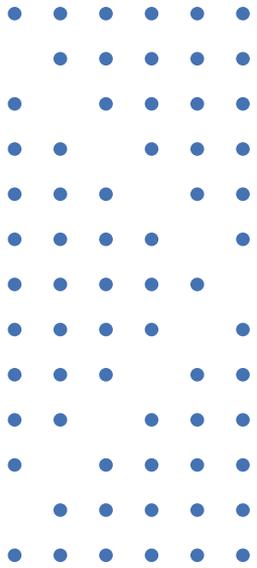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과 관련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만,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되는 비영리의료기관은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더욱이 국공립병원, 시립병원은 법인세자체가 비과세되며 다른 비영리의료기관은 뒤에서 언급할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서 대부분의 과세소득을 이연 시킬 수 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기부금등 수입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의료법인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다른 비영리법인에 비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

- 법인세법상 규정된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수입
 - 의료업이나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 주식(신주인수권, 출자지분) 양도수입
 - 의료업에서 사용한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수입
 - 수익사업관련 채권·증권으로 인한 수입

그러나 개인병원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영리사업자와 특별히 다른 조세규정이 없다. 이는 현행의료법상 법인형태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영리추구금지를 언급하고 있고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리추구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이외의 의료기관이 직면하는 세무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이 있다.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이지만 이로 인해서 매입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의료기관이 임대사업이나 주차장사업등과 같이 의료보전용역 이외의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겸업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매입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공제 문제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세법상 지방세 관련 규정도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에게만 주어지는 비과세 감면, 면제 규정이 있다.

상속·증여세법에 있어서 비영리의료기관은 공익법인에 해당되므로 상속인이 비영리의료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고 출연받은 비영리의료기관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법인세(소득세)관리

의료기관에 대한 법인세(혹은 소득세)의 과세소득은 의료수익 및 의료외 수익에서 의료비용 및 의료외비용을 차감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당기순이익 산출과정에서 적용된 의료기관 회계기준규칙 및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기준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정표를 거치게 된다. 특히 법인형태의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산출된 당기순이익이 그대로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는다. 아래에서는 과세소득 산출시 전반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부주의로 인한 과세 소득의 탈루 등 실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세법상 오류, 관리 부재로 인한 억울한 세금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소득세)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한다.

1. 의료수익

1) 연봉제의 장점

수익의 귀속시기 문제는 현실적으로 사업기간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지만 사업기간 종료시점에는 과세수입의 탈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수익의 인식기준을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로 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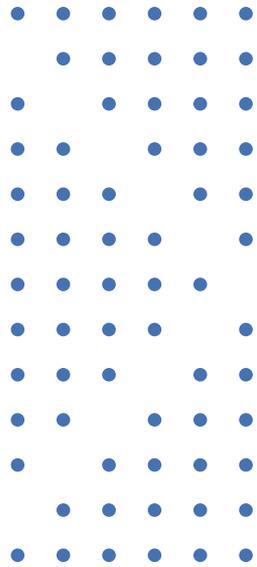
사실상 양자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즉 좀더 추상적인 기업회계기준상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를 세법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상 권리·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특히 영리법인에서는 양자의 해석차이로 인해 과세소득차이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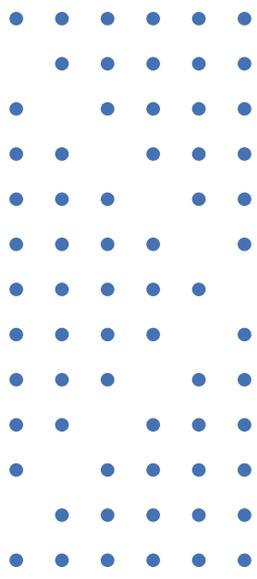
반면 의료기관의 의료수입 인식 및 귀속시기 결정의 문제는 좀 더 쉬울 수 있다. 세법에서는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는 용역수익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완료를 수익인식의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용역제공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용역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 즉 환자의 질병이 완쾌되는 날이나 퇴원하는 날을 용역제공의 완료로 볼 수도 있고, 검사, 진료, 투약, 수술 등 각 단계의 완료를 용역제공의 완료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료용역은 생산되는 동시에 제공이 완료되고, 이에 따라 권리·의무가 확정되고, 대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수익은 용역제공일을 기준으로 인식하면 적절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수익의 귀속문제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사업종료일 현재 입원 환자의 기 발생된 진료비등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과, 청구한 보험급여에 대한 삭감액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켜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업회계기준 등에서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의해서 삭감액을 추정하여 청구한 보험급여에서 차감한 금액을 수익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세법에서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삭감액이 확정된 시점에 수익에서 차감하든지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2) 진료비의 감면이나 할인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은 상황에 따라 자선환자, 직원, 기타이벤트 등에 의





해서 진료비를 감면해주거나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전 준비가 미약하거나 사후처리가 미숙한 경우 매출누락으로 처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감면이나 할인이 정상적인 에누리 및 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이나 할인을 해줄 수 있는 대상, 할인율, 기타조건들을 미리 정하여서 모든 다수에게 항상 보편타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회사의 사원건강검진을 유치하기 위하여 특정거래처에만 할인을 해준다면 이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매출누락과 접대비계상누락이 된다.

병원직원에 대한 할인이나 감면은 감면된 금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내라면 복리후생비로하고 초과금액은 당해 직원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러한 감면금액을 매출에서 빼고 의료수입금액을 집계한다면 매출누락의 문제 및 급여신고누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의료외수익

1)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비영리의료기관은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개인병원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한다. 다만 이자수입금액이 4,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2) 임대수입, 주차장수입, 매점·식당·영안실 운영수입 등

임대수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세무는 일반 영리사업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어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품을 기부 받거나 채무

를 면제받는 경우 해당 기부행위가 의료업수익사업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이지만 직접관계가 없는 기부나 출연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즉 거래를 위해서 제약회사로부터 받는 기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비영리의료기관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이므로 증여세가 면제된다.

4) 국고보조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수령할 때 당해 국고보조금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비영리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업이 고유목적사업이기도 하고 수익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수령한 국고보조금이 의료업수익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과세대상소득으로 보고 세무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일시상각충당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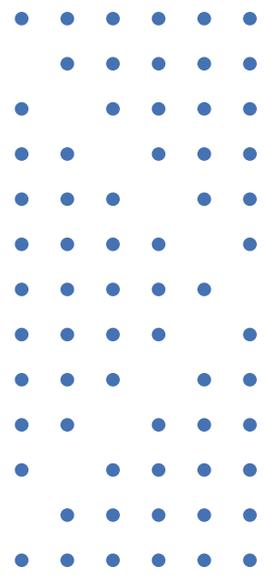
3. 의료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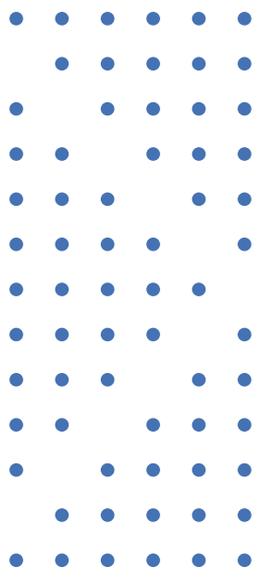
의료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이러한 비용들은 세무관리는 물론 병원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지출증빙확보, 내부결재, 비용의 타당성검토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해야 할 부분이다.

1) 인건비

병원의 구성원인 의사, 간호사, 사무직, 기술직등 병원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지급은 세무 상 큰 문제없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연봉제 계약에 의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통상 연봉총액에는 퇴직금이 포함되는데 이를 매월 일정금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액 속에 포함된 퇴직금은 세무상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해당직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의 처리에 주의를 요하는데 적법한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즉 연봉액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별도요구가 있어야 하는 등 조건과 1년 만료시 1회 지급등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 파견직원(의사)의 인건비 및 초빙의사의 인건비 타 병원에 의사 등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고, 초빙의사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초빙의사가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하거나 3.3%의 원천징수를 하고난 후의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개인병원의 경우는 원장의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2) 접대비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관계에 있는 자를 위해 무상으로 지출하거나 소비한 비용을 접대비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되어야하나 과소비억제, 과도한 접대행위방지 등을 위해서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여 한도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접대비 사용시 신용카드사용의 의무화와 접대비 실명제등의 제도를 세법상 도입하여 접대비사용을 가능한 한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 접대비 한도액

$$\text{한도액} = 12,000,000(\text{중소기업}18,000,000) \times \text{사업년도월수} \div 12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한도율}$$

- * 한도율 :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0.2%
- 500억원 이하 0.1%
- 500억원 초과 0.03%

* 의료기관의 중소기업 판정 : 상시근로자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인 병원

- 건당 5만원 초과 접대비는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만 접대비로 인정하고, 미수취시에는 무조건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 정규지출증빙이란 법인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말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의 업무관련성이 입증되도록 정규지출증빙이면 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접대목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자에 따라 배당, 상여 등으로 인정한다.

3) 대손금

의료미수금, 대여금등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의료미수금등 잔액에 대해서 1%의 금액을 미리 대손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손된 금액의 손금산입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손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오래된 채권에 대한 관리부재로 인해서 대손요건이 완성이 되었는데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기한이 경과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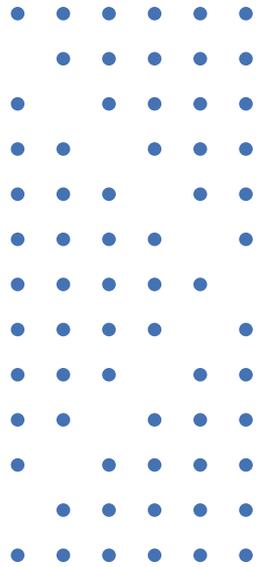
-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민법상(제163조) 의료기관의 의료와 관련된 채권은 3년 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어음 및 수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대손으로 인정한다.
-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소멸시효 산정이 유동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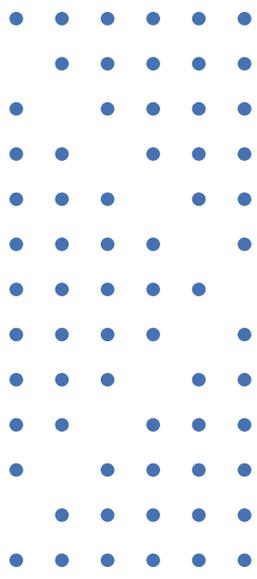
4) 유형자산의 취득 및 감가상각비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 의료장비, 차량, 인테리어 등에 투자한 경우 전 액을 일시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두고 감가상각의 과정을 거쳐 서 손금에 산입하게 된다. 개인병원의 경우 인테리어비용을 일시에 손금산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자산에 대한 즉시 상각규정이외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 지 못한다.

- 무상취득자산

기부 등을 통해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 장기할부조건 매입
장기할부로 고가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대가에는 이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총 지급대가에서 이자부분을 현재가치할인차금이라고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차감하고 난 후의 금액을 매입자산의 원가로 하여 감가상각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이에 대해 지급하는 전체금액을 취득원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의료장비를 Usance Bill 또 D/A Bill과 같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할 때 이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이 경우 D/A Bill 및 Shipper's Usance(공급자신용)Bill의 경우는 취득원가로하고 Banker's Usance(은행신용)Bill의 경우는 금융비용으로 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전액 취득원가로 함이 원칙이다.
- 소액자산의 즉시상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더라도 거래단위별로 구입원가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즉시상각으로 인정하여 손금 인정한다.

4. 의료외비용

의료외비용은 환자의 진료와 관계없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의 종류는 의료부대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외환차손, 각종자산처분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 입액, 고유목적사업비 등이 있다.

1) 의료부대비용

의료사업이외에 영안실,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의료부대비용이다. 세법상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에 대한 처리는 다른 영리사업체와 다를 바 없다.

2) 이자비용

병원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다음의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 지급받는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이자
- 업무무관자산과 업무부관가지급 관련 지급이자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이용하여 손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상 계상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은 의료외비용으로 분류 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4) 고유목적사업비

사회복지법인 병원등과 같이 의료업 이외에 고유목적사업이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전출하는 경우 의료외비용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다. **KHA**

